

제310회 임시회
2012. 5. 18.(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2. 5. 1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정지숙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5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5월 11일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정지숙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문 신설과 중복 면제조항 정리 및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4조제2항제5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제1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4조제2항
 제6호)
 -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
 → 「충청북도 명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
 (안 제4조제2항제6호)
-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안 제4조제2항
 제10호)
 -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 2천원
 할인(단, 단체 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
 → (안 제4조제3항제3호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및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신설 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으며,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 을 할인. 단,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장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p> <p>10.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p>	<p>제4조(입장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p> <p>1~2. (현행과 같음) <u>(신설)</u></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단, 단체 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